

# 제규정 관리 규정



## 한국항공대학교

## 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1996.3.1		16		
2	1998.10.21		17		
3	2001.3.1		18		
4	2004.12.1		19		
5	2006.7.1		20		
6	2007.4.1		21		
7	2008.8.13		22		
8	2010.11.5		23		
9	2014.7.28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## 제규정 관리 규정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(이하 ‘본 대학교’라 한다)에서 시행하는 제규정의 제정, 개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적용범위)** 제규정의 운용, 관리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**제3조 (정의)** ① 이 규정에서 제규정이라 함은 본 대학교 및 부설기관의 업무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학칙, 규정, 시행세칙, 내규 등의 성문화된 규범을 말한다.

② 규정이라 함은 본 대학교의 직제 및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율하는 성문 규범을 말한다.

③ 시행세칙이라 함은 학칙 및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성문규범을 말한다.

④ 내규라 함은 학칙 및 규정의 규율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비교적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인 효력을 갖는 성문규범을 말한다.

**제4조 (제정형식)** ① 규정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1. 총칙 : 규정의 목적, 적용범위, 용어의 정의등 총괄적인 사항

2. 본칙 : 기본사항, 지침, 절차 등

3. 부칙 : 시행일,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, 기존규정과의 관계, 효력기간 등

② 규정류의 체계는 장, 절, 조, 항, 호, 목의 순서로 한다. 다만 규정의 내용이 단순한 경우에는 장, 절을 생략할 수 있다.

③ 별표, 서식, 보기는 부칙 다음에 수록함을 원칙으로 하며, 시행세칙등에 위임할 수 있다.

④ 조문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.

⑤ 제2항의 표기에서 조는 제1조, 제2조로, 항은 ①, ②로, 호는 1, 2로 목은 가, 나로 그 이하는 (1), (2)로 표시한다.

⑥ 부칙의 조문은 1, 2로 표시한다.

**제5조 (효력 및 시행)** ① 제 규정의 효력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시행일부터 발생한다.

② 제정 또는 개정된 제 규정은 지체없이 시행한다.

③ 법령 또는 정관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.

④ 제규정 중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규정은 그 외의 규정보다, 규정은 세칙보다 효력이 우선한다.

⑤ 현행규정이 신규정에 저촉되는 때에 그 저촉되는 부분은 신규정에 따른다.

**제6조 (제정권자)** 제규정 및 세칙의 개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 단, 학부 학칙, 대학원 학칙은 고등교육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르며, 정관에 규정

된 사항은 정관의 정한 바에 따른다.<개정 2010.11.5. 2014.7.28.>

- 제7조 (입안절차)** ① 제규정의 입안은 그 규정을 필요로 하는 업무소관부서에서 행하되 그 내용이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정이 필요한 규정은 의견 수렴후 매년 5월 및 10월에 <별지 제1,2,3호>를 주관부서(기획처)로 송부 하고, 주관부서는 규정을 검토한 후 규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. 단 긴급을 요하는 제·개정 규정 일 경우 주관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.<개정 2014.7.28.>
- ② 제규정의 내용이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때에는 그 관련되는 부서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.
- ③ 제규정의 입안 또는 제정 및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획처에서는 업무소관 부서에 그 입안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사안에 따라 직접 제규정의 제정 및 폐기에 관한 입안을 할 수 있다. 다만 기획처에서 입안하는 경우 그 내용을 업무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7.28.>
- ④ 기획처장은 제출된 규정에 대하여 검토후 업무소관부서에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<신설 2014.7.28.>

- 제8조 (규정심의위원회)** ① 제규정의 제정 및 폐폐를 심의하기 위하여 총장의 자문기관으로 규정심의위원회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 이내로 구성한다.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고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08.8.13>
-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인수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- ④ 규정심의위원회에 기획홍보팀 제규정 담당자를 간사로 보하며, 회의록 작성 및 기타 서무를 담당케 한다.<개정 2007.4.1>
- ⑤ 제규정의 사안에 따라 자문기능을 위하여 규정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규정실 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<신설 2007.4.1>

**제9조 (주관부서)** 제규정의 제정, 폐폐, 운용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획처에서 관장한다.

**제10조 (관리)** ① 주관부서에서는 제정 및 폐폐된 제규정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규정대장에 등재한다.

- ② 제규정중 규정 및 세칙의 원본은 주관부서가, 학칙과 내규의 원본은 업무소관부서에서 보관하고, 필요에 따라 규정집을 편집하여 배포할 수 있다.

**제11조 (유권해석)** 규정류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기획처장의 유권해석에 따른다.

## 부 칙

1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제정된 규정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.
2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8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4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5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6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7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8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9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10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.
1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< 별지 1 > <신설 2014.7.28.>

## 규정 입안서

1. 부서명 :
2. 규정명 :
3. 제·개정(폐지)사유  
.
4. 주요 변경 내용  
.
5. 규정 제·개정 의견 수렴 또는 공시여부

구분	입안부서 판단 내용	조치사항
의견 수렴	<input type="checkbox"/> <u>관련위원회 개최</u> (위원회명 : _____)  <input type="checkbox"/> 학부(과)장 회의 개최 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회의 개최 (회의명 : _____)  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 위원회 등 개최 불필요  ※ 실시했을 경우 ‘□’ 안에 ‘V’ 표기 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개최일시 : 20 . . . ( )</li> <li>■ 회의명칭 :</li> <li>■ 회의내용 :</li> <li>■ 합의내용 :</li> </ul> <p>※ 회의내용 및 의견수렴 결과는 별첨함</p> <p>※ 여러 종류의 회의를 개최 했을시 ‘조치사항’ 내용을 별첨으로 작성함</p> <p>※ ‘합의내용’ 은 ‘제 규정 관리 규정’ 제7조 제2항에 해당될 경우만 작성함</p>
공시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e-mail (대상 : _____)  <input type="checkbox"/> Homepage 일반공지 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시 불필요  ※ 실시했을 경우 ‘□’ 안에 ‘V’ 표기 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공시기간 :</li> </ul> <p>※ 의견수렴 반영이 있을 시 그 결과 및 내용은 별첨으로 작성함</p>

- ※ 규정의 제·개정 시 규정 소관부서의 장이 규정 성격의 경중을 고려하여 의견수렴 또는 공시여부를 판단함
- ※ 위원회 개최 및 공시 시 ‘규정입안서(1~4)’ 및 ‘신규대조표’ 를 첨부함

**기획처장 귀하**

< 별지 2 > <신설 2014.7.28.>

○○○○ 규정 개정(안) 신·구대조표

현 행	개 정 (안)	개정사유
부 칙	부 칙	

< 별지 3 > <신설 2014.7.28.>

# ○○○○규정 (제)개정(안)

**SAMPLE**



한국항공대학교



## 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## ○○○○규정 개정(안)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.....한다.

:

:

( 중 략 )

:

: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